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부정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징수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징수 결정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청문 시작 10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여 청문을 할 수 있고, 징수 결정이 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으로 결정한 1,902건¹⁾(1,354,638,622원 중

965,733,246원 징수) 중 51건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미납하여 보장비용 징수처리를 지연하고,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는

[통보]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이행과 보장비용징수대상자와 반환명령 대상자에 대한 징수유형 구분, 최종 납부액 확인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정비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결정일자가 2014. 10. 1~2017. 9. 30.인 대상자의 환수(징수) 진행건(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자료, 2017. 10. 20. 현재)